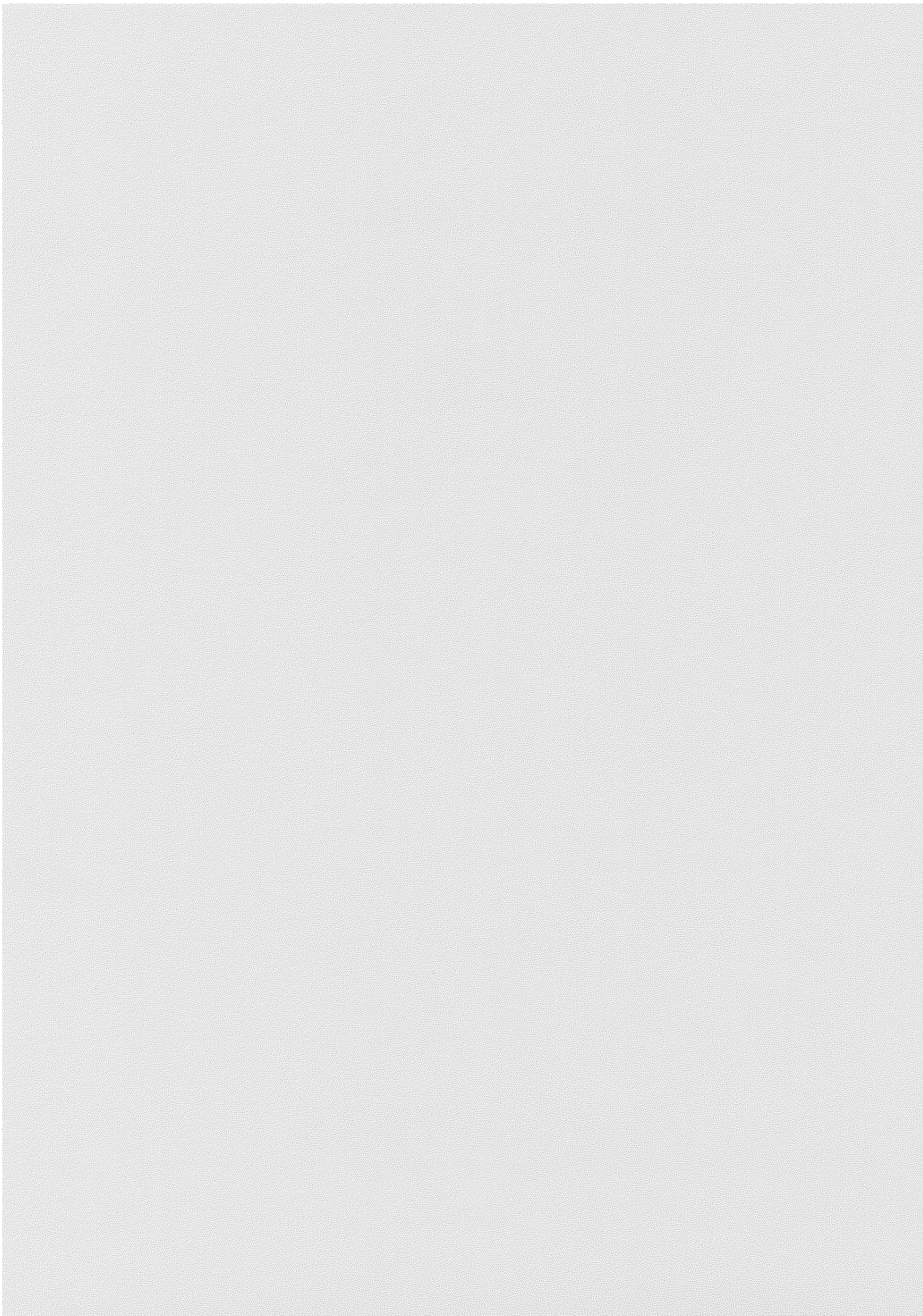


第14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會 議 錄

(2002.12.17.~1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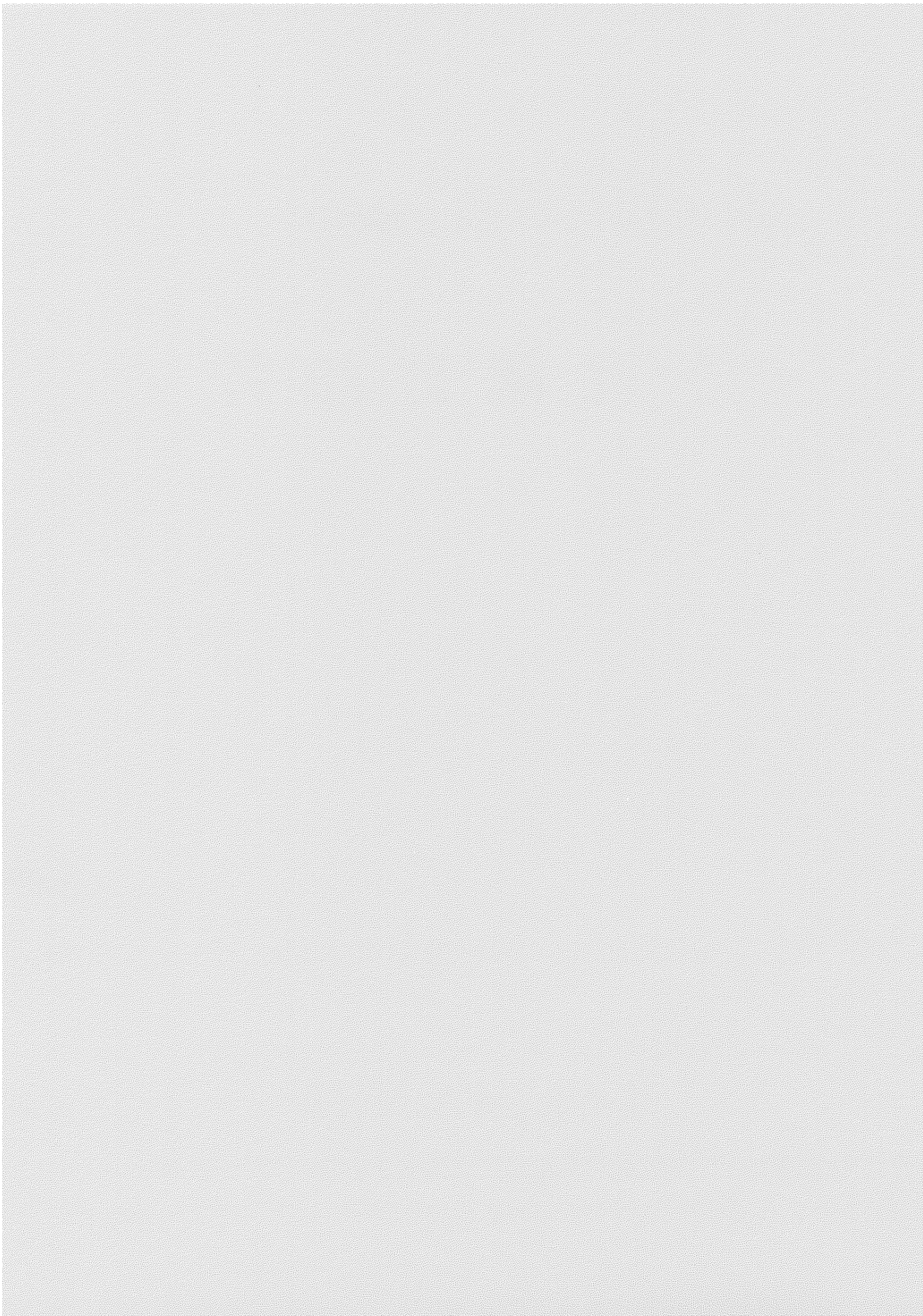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4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개회식 .....	201
II. 제14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03
III. 제14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207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	213
2. 의사일정안 .....	215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17
4.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무죄판결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 .....	231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12월 17일 (화요일) 11시 01분

## 開會式順(第148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대한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왕년)

(11시 01분 개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 의사담당 김왕년

(11시 03분 폐식)

지금부터 제14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12월 17일 (화요일) 11시 03분

## 議事日程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4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4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규강 위원 외 5인 발의)

(11시 03분 개의)

의사과장 김용환입니다.

###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의안발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 12월 9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규강 교육위원 외 다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공고 제2002-11호로 제14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같은날 고규강 교육위원 외 다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1. 경과보고

### ● 의장 이상일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옴)

### ● 의사과장 김용환

[제148회-제1차 본회의]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신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 청풍초·중통합학교위치변경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 변경계획안,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동일자로 집행청에 이송하였으며, 지난 12월 3일 집행청에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과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고규강 위원 외 다섯 분의 위원이 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고, 단재교육연수원 등 3개 직속기관을 방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4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6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12월 18일 및 12월 20일 이틀간은 직속기관 방문을 위하여, 그리고 12월 19일은 임시공휴일로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며, 12월 21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제14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회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7분)

● 의장 이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여섯 분의 위원을 대표하여 고규강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규강 위원 발언대로 나눔)

● 고규강 위원

교육위원 고규강입니다.

본 위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교육위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되는 국내외여비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줄이고 적정의 국내외여비를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와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내외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

비 조정 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아래란에 “2.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국내외여비규정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동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중 비고란에 “3.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외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규강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일

고규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셨고 내용이 간단하므로 조례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은 성영용 위원님과 송대현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4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반창남,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실 신건환, 초등교육과장 정무,  
중등교육과장 임흥빈,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이기석,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 3)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12월 21일 (토요일) 11시 00분

## 議事日程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무죄판결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

##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규강 위원 외 5인 발의)
2.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무죄판결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  
(진옥경 위원 외 6인 발의)

(11시 00분 개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 이상일

먼저, 의안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20일 진옥경 위원 외 여섯 분 전체 위원의 발의로 미군장갑차여중생 사망사건무죄판결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김천호 교육감님과 이기석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 2002년도 충북체육상 시상식 참석 관계로, 그리고 유선규 부교육감님께서 교육부 주관 시·도 부교육감 회의 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1분)

### ● 의장 이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

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무죄판결에대한결의문채택의견

(11시 03분)

###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무죄판결에대한결의문채택의견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일곱 분의 위원을 대표하여 진옥경 위원님께서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경 위원 발언대로 나눔)

### ● 진옥경 위원

진옥경 교육위원입니다.

전체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하신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무죄판결에대한결의문채택의견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문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해 원대한 꿈과 삶의 나래를 펴지 못하고 숨겨간 신호순, 심미선 두 여중생의 사망사건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에 대하여 온 국민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바, 이의 원인이 바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에 있음을 직시하고 또 다시 이처럼 불행하고 억울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건의 철저한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와 미국이 한·미협정 중 불평등한 조항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의 수용만이 작금의 한국민의 반미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음은 물론, 한·미간에 동등한 주권을 가진 동반자적 관계가 정립될 수 있음을 천명하고자 1만 6천여 충북 교육가족과 150만 충북 도민의 뜻을 모아 우리 교육위원 일동의 이름으로 본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채택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결의문, 우리는 주한미군 장갑차에 참혹하게 희생당한 여중생 효순이와 미선이의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린다.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숨져 간 어린 생명들을 지키지 못한 어른들로서, 특히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피고 지켜주어야 할 교육위원으로서 깊은 아픔과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어린 소녀들의 무참한 죽음에 대해 우리 사법당국이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한 가운데, 미군들끼리 재판을 진행하여 무죄 판결을 내린 처사에 대하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문제의 원인이 바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에 있음을 직시하고 또다시 이처럼 불행하고 억울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건의 철저한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와 미국은 한·미행정협정중 불평등한 조항 개정예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교육위원 일동은 물론 한국 국민들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미국 정부에

의해 하루빨리 받아들여질 때 진정으로 대등한 한·미 우호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민의 반미 감정도 누그러질 것이다.

아울러 1만6천여 충북 교육가족과 15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자라나는 2세 교육을 위하여 우리 교육위원 일동은 앞으로 미국이 한국 국민의 자주권과 민족적 자존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을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향후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미국이 대등한 주권을 가진 동반자로서 한반도는 물론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동반자적 자세를 가질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12월 21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동,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교육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감사합니다.

(진옥경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무죄판결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별첨 4)  
(끝에 실음)

● 의장 이상일

진옥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진옥경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 전원

[제148회-제2차 본회의]

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 사건무죄판결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무죄판결에대한 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침으로써 금년도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4대 충청북도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개원한 이후 4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다섯 번의 집회로 36일간의 회기 동안 15건의 의안과 20건의 일반안건 처리 및 13회의 소위원회 활동을 하는 등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4회의 의안관련 현장방문과 5개 직속기관 방문, 3일간의 교육위원회 연찬, 전국교육위원회협의회 참석, 전국체육대회 참관 격려, 학사시찰 등 교육위원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여 왔습니다.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더욱 진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직원께 지난 한해 동안 교육위원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동안 1만 6천여 교육가족과 150만 도민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교육위원회 활동에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바랍니다.

끝으로 계미년 새해에도 충북 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영광이 함께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4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폐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국장 반창남,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실 신건환,  
초등교육과장 정무, 중등교육과장 임흥빈,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2)
- ▶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무죄판결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별첨 4)

제14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2. 12. .

의 장 이 상 일 이 상민

위 원 성 영 용 成永龍

위 원 송 대 현 송대현

의사국장 이 상 기 이 상기

# 議 事 日 程 (案)

第148회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2. 12. 17. ~ 12. 21.(5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12월 17일(화)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  1. 제14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회 기 : 2002. 12. 17. ~ 12. 21.(5일간)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 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input type="checkbox"/> 산 회	
12월 18일(수) ~ 12월 20일(금)	<input type="checkbox"/> 직속기관 방문 ○ 충청북도단체교육연수원 ○ 충청북도중앙도서관 ○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	※본회의휴회 ※12. 19.(목) 임시공휴일
12월 21일(토) (11:00)	[ 제2차 본회의 ]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 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input type="checkbox"/> 폐 회	



# 議 事 日 程 (案)

第14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2. 12. 17. ~ 12. 21.(5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12월 17일(화)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  1. 제14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사회)회기결정의건 · 회 기 : 2002. 12. 17. ~ 12. 21.(5일간)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 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input type="checkbox"/> 산 회	
12월 18일(수) ~ 12월 20일(금)	<input type="checkbox"/> 직속기관 방문 ○ 충청북도단체교육연수원 ○ 충청북도중앙도서관 ○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	※본회의휴회 ※12. 19.(목) 임시공휴일
12월 21일(토) (11:00)	[ 제2차 본회의 ]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 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3)

의안번호	제 148-1호
의결 년월일	2002. 12. (제14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고규강 교육위원의 4명
제출년월일	2002. 12. 9.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48-1호

발의년월일 : 2002. 12. 9.  
발 의 자 : 고규강 교육위원외 4명

## 1. 개정이유

○ 교육위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되는 국내·외여비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줄이고, 적정의 국내·외여비를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와의 형평을 기하고자,

○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내·외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국내·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아래란에 “2.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내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함.

○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중 비고란에 “3.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외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함.



3. 개정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발췌분 붙임참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19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14조
-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 관한조례 제8조
-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 관한조례 제5조

나. 예산조치사항 : 해당없음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아래란에 “1”을 “비고 : 1”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내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외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p> <p>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1항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원)</p>	<p>[별표 1]</p> <p>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1항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원)</p>
<p>1. 철도운임구분표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p> <p>&lt;신 설&gt;</p>	<p>비고 : 1. (현행과 같음)</p> <p>2.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내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별표 2]</p> <p>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2항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미불화)</p>	<p>[별표 2]</p> <p>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2항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미불화)</p>
<p>비고 : 1. 숙박비·식비의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4]의 비고란에 정한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을 적용한다.</p> <p>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p> <p>&lt;신 설&gt;</p>	<p>비고 : 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외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의안번호	제 148- 1 호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 정 참 고 자 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19조 .....223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223
- 지방자치법 제32조 .....223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224
- [별표 7]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 .....225
- [별표 8]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지급범위 .....226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 관한조례 제8조 227
- [별표 1] 국내여비지급구분표 .....227
- [별표 2] 국외여비지급구분표 .....228
-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 관한조례 제5조 .....229

제 출 자	고규강 교육위원의 4명
제출년월일	2002. 12. 9.

## 관계규정(발췌분)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교육인적자원부]

**第19條** (地方自治法の 準用) 地方自治法 第5條, 第21條, **第32條**, 第32條의2, 第34條의2, 第35條의2, 第36條, 第37條, 第37條의2, 第44條, 第46條 내지 第49條, 第53條, 第59條 내지 第68條, 第74條 내지 第81條의 規定은 教育委員會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地方議會議員"은 "教育委員"으로, "議員"은 "委員"으로, "地方議會"·"議會" 또는 "本會議"은 "教育委員會"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는 "地方自治團體의 教育·學藝에 관한 事務"로,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市·道知事"는 "教育監"으로, "行政自治部長官"은 "教育人的資源部長官"으로, "委員會"는 "小委員會"로, "委員長"은 "小委員會委員長"으로 본다.<개정 2001.1.29>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교육인적자원부]

**제14조**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준용)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5조의4**, **제17조의2**, **제17조의4** 내지 **제19조**, **제19조의3**,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지방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1992.3.25, 2000.2.28, 2001.1.29>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69호 행정자치부]

**第32條** (議員의 議政活動費등) ①地方議會議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다음 各號의 費用을 지급한다.<개정 1999.8.31>

1. 議政資料의 蒐集·研究와 이를 위한 補助活動에 소요되는 費用을 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議政活動費. 다만, 議政資料의 蒐集·研究를 위한 補助活動의 費用은 市·道議會議員에 한한다.

2.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하여 公務로 旅行할 때 지급하는 旅費

3. 會期중의 活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會期手當

②第1項 各號에 規定된 費用의 지급기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全文改正 1994·3·16]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7.1 대통령령 제16879호 행정자치부]

제15조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 회기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 6,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9.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연육지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5.12.30> [전문개정 1995.7.1]

지방의회의원국내여비지급범위(제15조관련)

(단위 : 원)

구 분	지 급 기준액	철 도 운 입	선 박 운 입	항 공 운 입	자 동 차 운 입	현 지 교통비 (1 일당)	숙 박 비 (1 야 당)	식 비 (1 일 당)
시 · 도	의 장 · 부 의 장	1 등 급	2 등 정 액	정 액	정 액	10,000	41,000	25,000
	의 원	1 등 급	2 등 정 액	정 액	정 액	10,000	41,000	25,000
시 · 군 · 구	의 장 · 부 의 장	1 등 급	2 등 정 액	정 액	정 액	10,000	41,000	25,000
	의 원	2 등 급	2 등 정 액	정 액	정 액	10,000	22,000	18,000

- 비 고 : 1.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 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등 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8] <개정 1999.12.31>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지급범위(제15조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지 급 기준액	항공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 비 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시·도	의장· 부의장	1등정액	30	169	133	150	180	210
	의 원	1등정액	25	137	107	140	170	195
시·군 ·구	의장· 부의장	1등정액	25	137	107	140	170	195
	의 원	2등정액	20	120	81	130	155	180

- 비 고 :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5차개정 2000. 5. 4 조례 제2583호

제8조 (여비지급기준) ①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별표 1] <개정 96. 4.30, 97. 4. 4, 98. 5.15>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 장 부의장	1등급	2 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41,000	25,000
위 ·원	1등급	2 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41,000	25,000

1.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별표 2] <개정 96.4.30, 98.5.15, 2000.3.10>

국 외 여 비 지 급 기 준 표(제8조제2항 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칠도유입	신박유입	항공 유입	자동차 유입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준 비 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의장· 부의장	· 2등급이상의 동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 의 칠도유입 · 동급구별이 없는 경우에 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 비액	· 2등급이상의 동급구별이 있는 경우에 최상등급의 신입 · 동급구별이 없는 경우에 는 그 승선에 효하는 실 비액	1등급액		40	가동급 186 나동급 135 다동급 107 라동급 91	가동급 133 나동급 99 다동급 72 라동급 61	150	180	210
								140	170	195
위 원	· 공무원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급 또는 참대요급 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는 그 실비액	· 공무원상의 사유로 인하여 참대요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1등급액	실비액	35	가동급 151 나동급 109 다동급 84 라동급 72	가동급 107 나동급 78 다동급 58 라동급 49	140	170	195

비고 : 1. 숙박비 · 식비의 동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4] 의 비교란에 정한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을 적용한다.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동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전문개정 2000. 4. 8 조례 제2580호

제5조(여비지급기준)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의원의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하고, 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의장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10,000	41,000	25,000
의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10,000	41,000	25,000

비고

-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여행(동일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내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

(단위 : 미불화)

구 분	지급 기준	항공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준비금		
						15일미만	15일이상 30일미만	30일이상
의장 부의장	1등정액		40	186	133	150	180	210
의원	1등정액		35	151	107	140	170	195

- 비고 :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외여비지급 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안번호	제 148-2호
의결 년월일	2002. 12. . (제148회)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

제출자	진옥경 교육위원외 6명
제출년월일	2002. 12. 20.

#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

의안 번호	제148-2호
----------	---------

발의년월일 : 2002. 12. 20.  
발 의 자 : 진옥경 교육위원외 6명

## 1. 주 문

○ 주한 미군 장갑차에 희생당한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미군이 미군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처사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함.

## 2. 제안사유

○ 2002년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해 원대한 꿈과 삶의 나래를 펴지 못하고 숨져간 신호순, 심미선 두 여중생의 사망사건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에 대하여 온 국민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바,

○ 이의 원인이 바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에 있음을 직시하고 또다시 이처럼 불행하고 억울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건의 철저한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와 미국이 한·미협정 중 불평등한 조항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 이러한 요구의 수용만이 작금의 한국민의 반미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음은 물론, 한·미간에 동등한 주권을 가진 동반자적 관계가 정립될 수 있음을 천명하고자, 1만 6천여 충북 교육가족과 150만 충북도민의 뜻을 모아 우리 교육위원 일동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 3. 결의문(안) : 붙임과 같음

##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판결에 대한 결의문(안)

우리는 주한미군 장갑차에 참혹하게 희생당한 여중생 효순이와 미선이의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린다.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숨져 간 어린 생명들을 지키지 못한 어른들로서, 특히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피고 지켜주어야 할 교육위원으로서 깊은 아픔과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어린 소녀들의 무참한 죽음에 대해 우리 사법당국이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한 가운데, 미군들끼리 재판을 진행하여 무죄 판결을 내린 처사에 대하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문제의 원인이 바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에 있음을 직시하고 또다시 이처럼 불행하고 억울한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건의 철저한 규명과 제발 방지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와 미국은 한·미행정협정중 불평등한 조항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교육위원 일동은 물론 한국 국민들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미국 정부에 의해 하루빨리 받아들여질 때 진정으로 대등한 한·미 우호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민의 반미 감정도 누그러질 것이다.

아울러 1만6천여 충북 교육가족과 15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자라나는 2세 교육을 위하여 우리 교육위원 일동은 앞으로 미국이 한국 국민의 자주권과 민족적 자존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을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향후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미국이 대등한 주권을 가진 동반자로서 한반도는 물론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는 동반자적 자세를 가질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12월 21일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동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교육위원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진옥정

